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화 : 2094-0470~5



제1630호 2010. 4. 8

**공 고**

제2010-248호	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(면목5동 171-7번지 일대)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	.....	2
제2010-253호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.....	11
제2010-254호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.....	12
제2010-256호	구의회 부의안건 공고	.....	13

**인사발령**

행정직 9급 공무원 휴직(육아)	.....	14
일반직 공무원 휴직(육아)	.....	14
일반직 공무원 휴직(육아)	.....	14
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	.....	15
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발령	.....	15
8급이하 공무원 기동해제 및 전보	.....	16
기술직 공무원(간호8급) 복직	.....	16

**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**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2094-0474 / FAX: 2094-0479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
 D-2일 편집·교정 → 
 D-1일 편집·교정 → 
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## 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-248호

#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(면목5동 171-7번지 일대)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1. 우리 구 면목동 171-7번지 일대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(안) 및 정비구역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년 4월 8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0. 4. 9 ~ 2010. 5.10 (30일)

나. 공람장소 :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(☎ 2094-2113)  
면목5동 주민센터(☎ 2094-6160~2)

다.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(☎ 2094-2113)

라. 공람내용(별첨)

마. 기타사항

-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의 층수, 연면적,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)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-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,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
# 별첨 : 공람내용

**별첨 : 공람내용**

**1. 정비사업의 명칭 :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**

**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**

구 분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증감	
신 규	중랑구 면목동 171-1번지 일대	16,625.6	17,771.2	증) 1,145.6	구역확대

**3. 재건축정비계획(변경) 및 정비구역(확대)지정 신청 내용**

가. 제 목 :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(안) 및 정비구역 변경(구역확대) 지정 신청

나. 토지이용계획

- 택지계획 : 14,082.2㎡
-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: 1,155.9㎡, 어린이공원 1,291.6㎡, 광장 362.2㎡

다. 건축계획

- 용 도 :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- 건폐율 : 14.09%
- 용적률 : 299.65% (정비계획상 용적률 250%이하)
- 층 수 : 지상 31~42층, 최고 42층
- 건립세대 : 아파트 3개동 408세대,  
- 60㎡이하 : 119세대(29.2%) 85㎡이하 : 217세대(53.2%), 85㎡초과 : 72세대(17.6%)

**4. 정비구역지정(안)**
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증감	
신 규	면목5 주택 재건축정비사업	중랑구 면목동 171-1번지 일대	16,625.6	17,771.2	증) 1,145.6	구역 확대

## 나. 정비구역 변경 사유

-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71호('08.12.18)로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,
-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던 면목5동 171-8 만선연립(별도사업 추진 중)의 사업시행자가 별도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동 부지(171-8)를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.
- 부정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,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,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## 5. 정비계획(안)

### 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합 계		17,771.2	-	17,771.2	-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1,145.6	감1,145.6	-	기존 만선연립 부지
	제3종일반주거지역	16,625.6	증1,145.6	17,771.2	-

### 나. 정비계획 변경

#### 1) 토지이용계획(변경)결정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6,625.7	증) 1,145.6	17,771.2	100.0%	-
정비기반 시 설	소 계	2,543.4	증) 266.3	2,809.7	15.8%	
	공 원	1,025.3	증) 266.3	1,291.6	7.3%	-
	도 로	1,155.9	-	1,155.9	6.5%	-
	광 장	362.2	-	362.2	2.0%	-
택 지 (획 지)	소 계	14,082.2	증) 879.3	14,961.5	84.2%	-
	택지 (공동주택)	14,082.2	증) 879.3	14,961.5	84.2%	-

## 2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
### 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결정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기점	종점			
기정	대로	2	23	30~36.3	보조간선도로	6,500	면목동	성수동	일반도로	-	건교738 (63,12,24)
기정	중로	2	a	15	국지도로	167	면목동171-1 (대2-23)	면목동171-9 (중2-119)	일반도로	-	-

### 나)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조서

결정구분	도면번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명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공원	어린이공원	면목동 171-10번지일원	1,025.3	증)266.3	1,291.6	-	-

### 다) 광장 (변경없음)

결정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광장	교통광장	면목동 171-32번지 일원	362.2	-	362.2	존 치

## 3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시설구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	비 고	
			법적기준	기정	증감	변경		
부대 시설	근린생활 시설	구역 동 북측	세대당 6㎡ 이하	2,448.00이하	550.00	증 390.00	940.00	
복리 시설	관리사무소	102동 1층	50세대 이상의 경우, 10+(세대수-50)X0.05㎡이상	27.90이상	100.39	감 8.13	92.26	
복리 시설	경로당	102동 1층	100세대 이상의 경우, 40+(세대수-150)X0.1㎡이상	70.80이상	120.00	감 0.89	119.11	
복리 시설	경비실	자동차 출입구 앞	-	-	26.00	증 14.00	40.00	2개소
복리 시설	보육시설	102동 1층	300세대 이상의 경우, 21인 이상수용 보육시설 21인X4.29㎡이상	90.09이상	-	증 135.33	135.33	
복리 시설	문고	103동 1층	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(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3조)	33.00이상	-	증 96.86	96.86	500세대 이상
복리 시설	주민공동 시설	썬큰광장 지하	300세대 이상의 경우, 50+(세대수-300)X0.1㎡이상	60.80이상	120.00	증 66.34	186.34	
복리 시설	주민운동 시설	구역 북측	500세대 이상의 경우, 300+(세대수-500)/200X150	-	-	증 223.50	223.50	500세대 이상
복리 시설	어린이 놀이터	구역 동측	100세대 이상일 경우, 300+(세대수-100)X.1㎡이상	608.00이상	638.00	감 3.00	635.00	2개소
복리 시설	휴게시설	구역 남측	1+(세대수 - 500)/500	1개소	2개소	감1개소	1개소	

#### 4)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##### 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 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이주	
기정	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16,625.6	단독주택 용지	16,625.6	면목동171-7 번지일대	60	-	-	60	-	-
변경		17,771.2		17,771.2		61	-	-	61	-	-

##### 나) 건축시설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율 (%)		높이 최고층수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정비계획	예정법적상한	
기정	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16,625.6	획지1	14,082.2	면목동171-7번지 일대	54,453.201	공동주택	19.20 이하	266.81 이하	-	110m 31층
변경		17,771.2		14,961.5		65,700이하	공동주택	15.00 이하	250.00 이하	300.00 이하	130m 42층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<p>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설비율(소형주택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세대당 전용면적 60㎡이하 : 119세대 29.2% (기준 : 20% 이상)</li> <li>■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 : 336세대 82.4% (기준 : 60% 이상)</li> <li>■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초과 : 80세대 17.6%</li> <li>■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 : 전체 연면적의 75.76% (기준 : 50% 이상)</li> </ul>								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		<p>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확보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적용</p> <p>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</p> <p>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~257m)에 관한 관련 군부대 협의</p>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<p>구역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m 지정</p>								

### 다) 개발가능용적률 산정

기정

구 분	산 정 내 용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택지(공동주택)	계획 정비기반시설
	16,625.6㎡	14,082.2㎡	2,540.7㎡
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(순부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- 무상양도면적 = 2,543.4㎡ - 404.4㎡ - 816.0㎡ = 1,323.0㎡ (7.96%)</li> <li>* 인센티브 제외 면적 = 404.4 + 816.0 = 1,220.4㎡ :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(광장 362.2㎡, 도로 42.2㎡) + 무상양도 면적(816.0㎡)</li> </ul>		
개발가능용적률 산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획용적률 × (1 + 1.3α) = 210% × (1 + 1.3 × 0.0939) = 235.63%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                    = 1,323.0 / 14,082.2 = 0.0939  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계획 용적률 = 266.81% (분양 235.36%, 임대 31.45%)</li> </ul>		

변경

구 분	산 정 내 용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택지(공동주택)	계획 정비기반시설
	17,771.2㎡	14,961.5㎡	2,809.7㎡
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(순부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- 무상양도면적 = 2,809.7㎡ - 362.2㎡ - 42.2㎡ - 816㎡ = 1,589.3㎡ (8.94%)</li> <li>* 인센티브 제외 면적 = 404.4 + 816.0 = 1,220.4㎡ :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(광장 362.2㎡, 도로 42.2㎡) + 무상양도 면적(816.0㎡)</li> </ul>		
개발가능용적률 산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적률 + 기준용적률 × (1+1.3α) = 12% + 210% X [1 + (1.3 X 0.1062)] = 251.00% ≥ 250.00%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                    *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                    = 1,589.3 / 14,961.5 = 0.1062  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축계획 용적률 = 299.65% (분양 274.34%, 소형주택 25.31%)</li> </ul>		

### 5)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도시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</li> <li>◆ 조망형 경관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</li> <li>◆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폐율을 낮추어 경관확보</li> <li>◆ 옹벽과 방음벽, 담장 등 구조물에 담쟁이 등의 식재로 벽면 녹화</li> </ul>	-
환경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</li> <li>◆ 보도·주차장 등을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</li> <li>◆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 조성</li> <li>◆ 녹지면적 확보로 동·식물의 바이오톰(생물 소공간) 공간 확보</li> <li>◆ 담장의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식재, 화단 설치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</li> <li>◆ 동2로(30m) 및 사가정길(30m)변 방음림 설치로 차량소음 대책 마련</li> </ul>	-
재난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화재 :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</li> <li>◆ 수해 : 지구내부로 유입 억제</li> <li>◆ 교통 :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 동선 체계 구축</li> <li>◆ 재난방지형 옥외공간구성, 건축설계, 시설물 설치 계획</li> </ul>	-

## 6)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비고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	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	증212	해당사항 없음	-

※ 기존세대수는 단독주택은 1세대,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세대수 적용

※ 408(계획세대수)-196(기존세대수)=212세대

## 7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가 구	면 적 (㎡)	획지 번호	획 지				비 고
				위 치	면 적(㎡)			
					기 정	증 감	변 경	
가구	가 구 전 체	17,771.2	획지1	면목동 171-7번지일원	14,082.2	증) 879.3	14,961.5	공동주택지
			획지2	면목동 171-7번지일원	1,025.3	증) 266.3	1,291.6	공원
			획지4	면목동 171-9번지일원	1,155.9	-	1,155.9	도로
			획지5	면목동 171-32번지일원	362.2	-	362.2	광장

## 8)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건립 위치	부지면적 (㎡)	동수	세대수	세대규모(전용 )	비고
정비구역 내	-	-	45	59.94㎡이하 45세대	5,415.21㎡ (지상:3,837.50㎡)

### ■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

구 분		계 획	비 고
법적 상한용적률		• 300%	
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		• 250%	
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량	용적률	• (300% - 250%) X 50% = 25.0% 이상	
	연면적환산	• 25.0% X 14,961.5㎡ = 3,740.38㎡ 이상	
재건축소형주택공급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급세대수 : 45</li> <li>공급연면적 : 3,837.50㎡</li> <li>공급용적률 : 25.31%</li> </ul>	

# 공 램 의 건 서

(접수번호 : )

## □ 대상사업

안 건	면목동 171-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
사업위치	중랑구 면목5동 171-7번지 외 81필지

## □ 의견제출자

성 명	(전화번호: )
주 소	
소유물건	위 치
	규 모

## □ 제출의견

2010. . .

의견제출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중 랑 구 청 장    귀 하

■ 위치도

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기타 상위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,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”으로,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업무 담당과장”으로, “재무과장”을 “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”으로,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”으로 “여성복지담당주사”와 “여성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”로 개정하여 조직직제 개편 등의 사유 발생에 대한 유연성 확보(안 제24조, 제35조, 제40조)
- “모부자가정” 및 “편부모가정”을 “한부모가정”으로 현행화(안 제5조 제1항, 제15조 제1호)
-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 실시 가능(안 제14조 제6항 신설)
-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의무 명시(안 제16조의 2)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(☎2094-1752)

2010년 4월 8일

중랑구청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제16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함(안 제4조제1항)
-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, 증명서류를 제출함(안 제4조제2항)
-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,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(안 제5조제3항)
-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신설함.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(☎2094-1755)

2010년 4월 8일

중 랑 구 청 장

##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I. 안건명 :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가. 개정이유

조직의 활성화와 잠재역량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직급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채 해소 및 직원들의 사기양양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【별표2】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
- 정원조정 내용

#### 【별표2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##### 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개정전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32%이내	7%이상
개정후비율	1%이내	7%이내	22%이내	31%이내	32%이내	7%이상

### II.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(☎2094~0310~4)

2010년 4월 8일

중랑구청장

**인사발령**

**행정직 9급 공무원 휴직(육아)**

2010. 4. 1.

증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김지혜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(2010.04.01.~2011.01.31.)	면목본동	지방행정서기보

**일반직 공무원 휴직(육아)**

2010. 4. 4.

증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연미숙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(2010.04.04.~2011.04.03.)	면목제7동	지방사회복지서기

**일반직 공무원 휴직(육아)**

2010. 4. 5.

증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김미소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(2010.04.05.~2011.10.04.)	면목제3·8동	지방행정서기

##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

2010. 4. 5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장승모	지방공업서기보시보(화공)에 임함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
##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발령

2010. 4. 5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배영규	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(총무과 실무수습)	(신)	(규)
2	김승찬	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(총무과 실무수습)	(신)	(규)
3	김민경	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(총무과 실무수습)	(신)	(규)
4	김종인	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(총무과 실무수습)	(신)	(규)

## 8급이하 공무원 기동해제 및 전보

2010. 4. 6.

종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정미화	면목제7동 기동근무를 해제함 면목제7동 근무를 명함	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	지방행정 주사보
2	김미영	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기동근무를 해제함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	보건소 의약과	기능 8급 지방사무실무원 (필기)
3	김미아	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동근무를 해제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	도시환경국 주택과	기능 8급 지방사무실무원 (필기)

## 기술직 공무원(간호8급) 복직

2010. 4. 8.

종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최이녀	복직을 명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	보건소 보건행정과	지방간호 서기